



21세기를 선도하는 노동운동의 정론지

식품노동자

통권 제1호

2005년 6월 10일

발행인 : 백영길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57

TEL : (02)2679-6441~3

FAX : (02)2679-6444

www.kffiu.or.kr

발간사

식품산업노동자의 새로운 도약과 힘찬 전진을 위한 정론지로 성장하길 바라며 ...



전국식품산업노련 백영길 위원장

지난 5월 4일 우리 연맹은 새로운 보금자리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더불어 당 연맹은 보다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각오를 새로이 하며 식품산업 노동자의 뜻이 반영된 우리의 정론지인 “식품노동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식품노동자”는 사회 전 영역에서 자본과 권력이 노동자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온 근래의 상황에 대하여 우리 노동자들이 주체적 의식을 갖고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98년 IMF체제 이후 이 땅의 노동자들은 경제희생이라는 미명아래 온갖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정작 외환위기의 주범인 자본과 권력은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반성은커녕 노동자들에게 국가부도의 책임을 전가하는 작태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였으며, 사회적으로 반노동자 정서를 심화하기 위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고 노동계 말살 책동을 조장하였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악랄한 행위에 노동자의 삶은 전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이상 우리 노동자만이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반노동운동 정서가 팽배한 이 시점에 우리의 권익을 지키고 보호하며, 한 단계 향상된 형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세력으로 성장하려면 우리가 먼저 확실히 변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고단한 삶과 고착화된 노동위기 구도를 돌파할 견고한 대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자본이 지배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노동운동 세력이 뒤흔어지지 않고 힘차게 전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단결하고 이 단결력을 바탕으로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노동운동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노동자 스스로 능력을 배양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권익은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최상의 길입니다.

모쪼록 이번에 발행되는 우리의 정론지인 “식품노동자”에 수록될 다양한 형태의 노동계 흐름과 노동문화를 비롯한 노동관련 기사가 동지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향후 본 정론지는 우리 식품산업 노동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단위사업장으로부터 기고를 받아서 제작할 방침입니다. 우리 식품산업별 실정에 맞는 유익하고 알찬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끝으로 “식품노동자” 창간호가 제작되기까지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보내 주신 동지들께 지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노동칼럼

비정규 법안을 보는 노사정의 시각차



전국식품산업노련 박준우 기획부장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라는 미명하에 개악법안을 만들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시도하였으나, 정부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거센 반대와 국가인권위원회 및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부정적 견해에 부딪혀 정부의 의도가 수포로 돌아갔다. 그 동안 노동계는 노사정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비정규법안 협상을 정부 및 사측과 힘겹게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비정규직 법안의 합의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하였지만 정부와 경영계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실패로 끝났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유 및 기간 제한에 대한 노·사의 의견 불일치가 합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노동계는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규정 도입과 관련하여 출산·육아·질병·결혼 등으로 인한 대체 근로가 필요한 경우, 계절적 업무의 특성이 고려된 경우, 성수기와 비수기에 전체근로자의 고용규모가 확연히 차이나는 사업장의 경우,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사업의 경우 및 일시적·임시적 고용 등과 같이 예외적 경우에 한정해 기간제 근로를 사용하도록 요구하였다. 기간제 사용기간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1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고용의제 조항 = 정규직화)하도록 하였다. 반면에 사용자의 주장은 기간제 근로의 사용제한을 두더라도 3년차 이상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기간제 근로의 사용사유는 업무특성, 노동력 수요, 근로자의 개인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3년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사유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것이 노동계를 크게 자극하였다. 노동계에서 사용자 측의 이 같은 안이 사실상 3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무제한 사용하고 나서 3년 뒤에 사용 사유에 적합한 일부 기간제 근로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해고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한 것이다.

즉 노동계에서 동등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성과를 내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반면에 경영계는 기간제 근로와 차별처우 조항이 자신들이 주장한 원안대로 타결되는 것을 전제로 파견근로는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을 유지하되 직종을 확대 조정할 수 있다는 견해다. 단 휴지기(정부안 3개월)제도를 도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 다른 쟁점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는 노·사가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도 명문화를 놓고 이견을 보인 바 있다. 노동계에서 “남녀고용평등법 6조 2항”의 규정과 같이 “동일노동의 기준을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는 연공급 임금 체계

“ 지금처럼 노·사·정이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해
 ‘동상이몽’의 자세를 유지하고
 협상을 하게 되면
 합의는 정말 실패로 끝날지도 모른다. ”

가 유지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명문화에 반대하고 있다. 최근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이 차별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를 통해 차별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성희 소장도 “그간 우리사회는 사회적 기준을 갖고 통제할 기반과 장치를 전혀 갖지 못했다”며 “차별 받는 기간제 근로의 남용을 막기 위해선 기간제 사유제한과 같은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규제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비정규직 입법안을 놓고 노사가 순조롭게 타결보지 못한 것은 정부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노동부)는 자신들이 제출한 법안이 수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큰 골격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을 되풀이 강조하며 경직된 태도의 자세를 보였다. 이런 이유로 노동계에서 경영계가 협상과정에서 입장이 자주 바뀔 때마다 정부의 사주를 받고 협상에 임한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노총 이응득 위원장이 “노사정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노동부다. 노동부가 경영계를 사주하면서 협상이 꼬이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측면에서 해석하면 될 것이다. 정부안을 전폭 반영하여 경직된 태도로 협상에 임해 온 경영계의 자세를 보아서는 앞으로 비정규직 입법안이 합의로 도출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여기에 정부여당은 6월 국회회기 안에 비정규직 입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공공연하게 입장을 밝히면서 노동계를 한층 더 압박하고 있다. 물론 노·사·정이 국회 회기와 무관하게 비정규직법을 합의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처럼 노·사·정이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해 ‘동상이몽’의 자세를 유지하고 협상을 하게 되면 합의는 정말 실패로 끝날지도 모른다.

이 시점에서 협상 주체들이 생각해야 될 점은 이 법안의 목적이 노동조건이 가장 열악한 이 땅의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은 분명 사회적 약자다. 여태까지 정부와 경영계가 보여준 친자본적이면서 사회 불평등 내용의 협상 안을 갖고 협의에 임한 태도는 진정 비정규직의 보호라는 사회적 양극화의 해소와는 거리가 먼 행태였다. 정부와 경영계는 지금부터라도 비정규직이 처한 차별과 불평등의 상황을 똑바로 직시하면서 협상에 임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노·사·정이 합의로 가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

**노동계
핫이슈**

2005년 최저임금, 최소한 전체노동자 임금의 절반은 되어야 한다

시급 3,900원, 월환산 815,100원



한국노총 이민우 정책국장

200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지난 4월 15일부터 시작되었다.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법정 최저임금이다. 6월 말경이면 노동자 가정이 한 달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저생활임금이 결정되는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은 시급 2,840원(월 환산액 641,840원)으로 최저생활비로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전체 노동자 임금평균(정액급여)의 50%에 훨씬 못 미치는 39%의 수준이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단신가구 생계비(15-29세) 1,135,234원의 56.5%, 한국노총 1인 가구 표준생계비 1,396,795원의 46%밖에 되지 않는 저임금에 처해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이다.

불안정 노동과 저임금에 처한 비정규 노동자가 전체노동자의 절반이 넘어섰고 임금 수준도 반밖에 되지 않는 차별과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된 우리 현실에서, 국가가 법으로 정하는 최저임금미만에 속하는 노동자가 2004년 8월 기준 노동자 전체의 8.8%인 125만 명 정도가 되며, 이들 중 47% 가량인 58만6천명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라고 노동부는 밝힌 바 있어 생존조차 어려운 최저임금 노동자의 매우 심각한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최저임금 노동자중 비정규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94%를 차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정복지 및 부가급여 적용 비율과 사회보험 적용 비율을 보면 최저임금 노동자의 차별과 소외가 훨씬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의 부가급여 적용 비율은 퇴직금 21.9%, 상여금 23%, 연장근로수당 16.5%, 연월차휴가 15.6%, 출산휴가 5.3%, 연공급 15.2% 수준이며, 사회보험 적용 비율은 국민연금 22.1%, 건강보험 24.6%, 고용보험 22.6%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차별임금 격차 해소와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결정수준 및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최저임금투쟁을 양 노총을 포함하여 23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 차원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현행 최저임금이 적다”가 국민의 88.3%, “최저임금이 절반은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73.4%로 나왔듯이 대다수 국민이 노동계의 주장을 지지한 바 있다.”

2005년도 최저임금 요구는 전체노동자 임금의 절반수준인 시급 3,900(월환산 815,100원)을 쟁취하고 노동계가 요구한 제도개선을 확보해내는 것이다.

그런데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2005년 5월 4일 임시국회에서 ▲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소득분배율 신설 ▲ 6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미만자 감액적용에서 전액적용 ▲ 수습자로 3월이내 및 감시·단속노동자 감



액적용 신설 ▲ 최저임금 미달액 원하청 연대책임 신설 ▲ 노동시간 단축분 최저임금 저하금지 신설 ▲ 최저임금 적용시기 매년 1월 1일-12월 31일 변경등이 개정되어 상당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고, 최저임금의 전체노동자 임금 절반수준의 명시와 초과근무수당 성격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적용하는 택시노동자제도개선문제등은 과제로 남았다.

작년 양대노총이 의뢰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현행 최저임금이 적다”가 국민의 88.3%, “최저임금이 절반은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73.4%로 나왔듯이 대다수 국민이 노동계의 주장을 지지한 바 있다.

따라서 2005년 최저임금투쟁은 전체노동자 임금의 절반수준을 최저임금으로 확보해내는 것에 집중할 것이며, 택시노동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노총 산별·지역조직 및 최저임금연대와 함께 최저임금 현실화투쟁에 적극 매진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중소기업 및 종사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 및 소득분배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다. ☺

노동자로 살면서...

소중한 추억



대전제분 위원장 최노석(연맹 부위원장)

요즘 조합활동을 하고 있는 후배 노동자들은 우리 때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조합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조합활동을 할 때만 해도 지금처럼 노사관계가 원만히 잘 유지되는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노사관계는 억압과 폭력, 착취가 만연된 불합리한 구조였습니다. 이렇게 비민주적인 상황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것은 더욱 힘들고 또한 사명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나는 동료들과 함께 참된 노동자가 되기 위하여 가리봉의 허름한 지하 노동운동 단체를 찾아갔습니다. 그 곳에서 우리들은 노동법에 대한 기초교양 교육과 풍물놀이 그리고 조직운동과 노동이념을 학습하였습니다.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과 나는 소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노동관련 지식은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만든 거짓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노동관련 지식이 절대적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충격과 새로운 진리의 수용으로 나의 사고가 확장되면서 한 동안 내 머리 속은 옛 지식과 새 진리가 혼돈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모르는 희망이 나의 마음 속에서부터 솟아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우리를 지도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

열적으로 행동한 모습이 지금까지 나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냘픈 외모에 얌전한 체격 바람불면 날아갈 것 같은 나약하게 생긴 그 사람, 나와 동료들은 당시 우리가 궁금해 한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물어보았으며, 아울러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 때 우리 눈에 비친 그 사람은 노동운동의 만능박사였습니다. 나와 동료들은 노동운동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 좋았으며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즐거움이었으며 그 곳에서 우리와 같은 처지의 노동자를 만나서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기쁨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노동자들이 누리고 있는 노동조건 개선은 그 사람과 같은 조직 운동가들이 묵묵히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천직(天職)처럼 소외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그 후 조합간부가 되면서 조합활동에 매진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그 곳을 찾아가는 회수가 줄어들면서 어느 새 발길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 사람에 대한 얘기는 가끔 들었지만, 만나보지 못한 채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노동운동을 전혀 모르던 초보 노동자인 우리 동료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가르쳐 준 그 사람은 우리들에게 있어 노동운동의 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 어디서 살든 꼭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나와 동료들은 그 사람과 맺었던 인연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

노동문학

노동의 새벽

시인 박노해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난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거운 소주를 붓는다
 아
 이리다간 오래 못 가지
 이리다간 끝내 못 가지

설은 세 그릇 짬밥으로
 기름투성이 체력전을
 전력을 다 짜내어 바둥치는
 이 전쟁 같은 노동일을
 오래 못 가도
 끝내 못 가도
 어쩔 수 없지

탈출할 수만 있다면,
 진이 빠져, 허깨비 같은
 스물아홉의 내 운명을 날아 빠질 수만 있다면
 아 그러나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죽음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
 이 질긴 목숨을,
 가난의 명예를,
 이 운명을 어쩔 수 없지

늘어쳐진 육신에
 또다시 다가올 내일의 노동을 위하여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거운 소주를 붓는다
 소주보다 독한 깡다구를 오기를
 분노와 슬픔을 붓는다

어쩔 수 없는 이 절망의 벽을
 기어코 깨뜨려 솟구칠
 거치른 땀방울, 피눈물 속에
 새근새근 숨쉬며 자라는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분노
 우리들의 희망과 단결을 위해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거운 소주잔을
 돌리며 돌리며 붓는다
 노동자의 햇새벽이
 솟아오를 때까지

(시집 {노동의 새벽}, 1984)



추천도서

"전태일 평전"



이 결단을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망설이고 괴로워했는가?

지금 이 시각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상한 내 형제의 걸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걸으로.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조금만 참고 견디어라. 너희들의 걸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너희들은 내 마음의 고향이로다.

-전태일의 일기 중에서-

청년 노동자 전태일의 일대기. 고 조영래 변호사가 수배생활 중 혼신을 다하여 집필한 것이다. 평화시장 어린 동심들의 고통에 항상 가슴 저려 하며 시들어 가는 그들의 생명을 위해 스물둘의 젊음을 불길 속에 내던졌던 전태일의 삶과 투쟁 그리고 죽음을 담았다. 출간이래 공장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으며, 무관심에 길들여진 세대의 잠자는 양심을 흔들어 깨웠던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의 개정판이다.

전태일은 1948년 대구에서 태어나 1970년 서울 평화시장 앞 길거리에서 스물둘의 젊음으로 몸을 불살라 죽었다. 먼지구덩이 속에서 햇빛 한번 못보고 하루 열여섯시간을 노동해야 하는 어린 여공들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가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그는 죽었다. 그는 말하였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한 것이라고. 부자의 생명처럼 약자의 생명도 고귀한 것이라고.

그는 싸워갔고, 죽어갔다.

전태일은 이제 독자들의 가슴속으로 간다. 그리고 당신의 심장을 두들기며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고 소리칠 것이다.

[북토피아 제공]